

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10. 16. 이정임의원외 4명
나. 회부일자 : 2009. 10. 16.
다. 상정일자 : 2009. 10. 23.(제16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정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해온 노인들이 건전한 여가 생활을 영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 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
-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경로당운영비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고,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, 취미활동, 정보교환, 여가활동 및 공동일자리 지원등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대상 경로당을 규정함(안 제2조)
- 시장의 경로당 운영 실태 조사와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함(안 제3조)
- 경로당 시설 운영비, 냉·난방비, 시설 환경개선비등의 경로당 지원범위를 규정함, 특히 경로당의 이용인원, 시설규모,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근거와 사유를 규정함(안 제5조).
-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시장의 프로그램 개발·

지원 책무를 규정함 (안 제6조)

- 여가시간을 생산적인 소득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 알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7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흥완식)

-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한 경로당의 수요와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경로당 운영과 지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써
- 본 조례안은
 - 우리시 관내 경로당 개소수는 2009년 상반기 현재 289개소에 회원수는 18,898명으로 경로당과 노인회원수는 증가일로에 있음
 - 우리시의 경로당 운영등에 지원되는 예산은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466백만원, 가스 및 전기안전점검수수료 18백만원, 프로그램관리사업 16백만원, 신문보급지원 15백만원, 장수농장 운영비 지원 4백만원, 증개축 및 기능보강 520백만원등 2009년도에 1,039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음.
 - 특히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의 경우 경로당의 규모와 회원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제정 조례안에서는 이용인원, 시설규모, 운영실태등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일률적 지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
 - 또한 경로당운영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계획 수립의무와 각종프로그램 개발지원, 공동작업장 운영등 취미와 여가활동, 소득활동지원등 경로당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상위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으며, 기타 법적 행정적인 별도 이견은 없음

※참고자료 : 제천시 경로당 현황 1부 끝

제천시 경로당 현황

읍면동별	개소수	규모		회원수		활용 형태	
		50㎡ 미만	50㎡ 이상	30인 미만	30인 이상	단독	공동
계	289	54 (최소13)	235 (최대196)	98 (최소9)	191 (최대165)	169	120
봉양	40	8	32	12	28	27	13
금성	17	17		2	15	3	14
청풍	19	3	16	18	1	15	4
수산	19	2	17	8	11	8	11
덕산	18	2	16	8	10	8	10
한수	7	1	6	4	3	3	4
백운	25	1	24	12	13	20	5
송학	25	1	24	6	19	15	10
교동	18	4	14	5	13	15	3
고암모산	13	3	10	4	9	5	8
중앙의림	3		3		3		3
남천동현	7	1	6	2	4	7	
서부영천	10		10	6	4		10
용두	19	2	17	4	15	13	6
신백두학	21	1	20	1	20	9	12
청전	17	7	10	4	13	17	
화산	11	1	10	1	10	4	7

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

- 운영비 : 월 72천원 / 개소
- 난방비 : 연간 750천원/ 개소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(답변자 : 이정임 의원)

- **질의)**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경로당은 현존에 있으면서 필요불가급함. 지금 조례안대로 집행을 해 주는 것이 앞으로 경로당이 실질적인 발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듬. 원안가결을 동의드립니다.(양순경 의원)
- 답변)** 감사합니다.

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 가결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1부. 끝.